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밀알 행복한일터의 1차 추경 예산(안) 총액은 세입 369,942,400원, 세출 369,942,400원으로 한다.

제 2 조 1. 세입·세출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.(관 또는 항 단위)

2. 세입의 주요 재원

관/항	사업수입	보조금수입	후원금수입	전입금	이월금	잡수입	총액
예산	99,000,000원	235,755,000원	12,675,000원	2,000,000원	18,512,400원	2,000,000원	369,942,400

3. 세출의 주요 재원

관/항	사무비	재산조성비	사업비	잡지출	예비비 및 기타	보조금반환	총액
예산	230,197,000원	6,610,000원	132,329,000원	200,000원	606,154원	246원	369,942,400

제 3 조 세입·세출 예산 명세서는 붙임 「2020년 행복한일터 세입·세출 1차 추경 예산(안)」 과 같다.

제 4 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 5 조 예산의 전용에 있어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, 제16조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·항·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대표이사(또는 시설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제 6 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및 후원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7 조 제5조와 제6조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, 법인이사회회의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8 조 기타 회계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변경된 과목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며 그 외 예산 총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.

2020년 1차 추경 예산 내용

<세입>

(단위 : 원)

구분	과 목			예산액	전용액	예산현액	사유
	관	항	목				
세입	보조금수입	보조금수입	시군구보조금	225,928,000	5,827,000	231,755,000	- 시군구 확정내시에 따른 추경
	이월금	이월금	전년도이월금	19,300,000	-787,600	18,512,400	- 이월금 정정

<세출>

(단위 : 원)

구분	과 목			예산액	전용액	예산현액	사유
	관	항	목				
세출	사무비	인건비	급여	149,055,200	4,174,600	153,229,800	- 시군구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
			제수당	6,898,000	164,720	7,062,720	
			상여금	14,830,000	414,980	15,244,980	
			퇴직적립금	14,232,000	396,190	14,628,190	
			사회보험부담금	18,012,800	76,510	18,089,310	
			기타후생경비	800,000	600,000	1,400,000	
사업비	생산활동지원사업비	생산활동사업비	3,000,000	-800,000	2,200,000	- 수익금 이월금 감액에 따른 예산 정정	
		보조금반환	0	246	246	-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이자 반납 이월금에 따른 추경	
		예비비	594,000	12,154	606,154	- 이월금에 따른 추경	